

2025 실시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

(2026.6,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총괄팀)

◇ 2025 실시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상세정산 관련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동 사례는 2024년도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점검한 결과이므로, 2026년 사업비 집행 시에는 해당 사업년도 집행기준 확인 필요

□ 주요 지적사례 현황

유형	주요 내용
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	○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, 관광성 비용 등 집행
	○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집행
	○ 사업과 무관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집행
대학 자체 지급기준 미준수	○ 전문가활용비(강사료) 지급기준 미준수
	○ 회의비 지급기준 초과 집행
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	○ 대학 축제 및 행사 개최에 따른 섭외비용 지출
	○ 기타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 등
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	○ 사업기간 외 사업비 집행
	○ 비목별 집행한도 초과
	○ 기타 부적정 사업비 집행 등

참고 2025 실시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상세정산 유형별 주요 지적사례

참고

2025 실시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상세정산 유형별 주요 지적사례

1.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

□ 주요 지적내용

①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, 관광성 비용 등 집행

- ○○○○ 대학은 국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(입장료, 관광성 경비 등)을 사업비로 집행

<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·운영 기준>

- 사업과 무관한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,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성(보상) 지출, 외유성 국내외출장비, 동문회, 교직원 동호회 행사 등 집행 불가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·관리 매뉴얼>

[주요 집행 제한 항목]

- 사업과 무관한 외유성·단발성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

<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>

[주요 집행 제한 항목]

-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

②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집행

- ○○○○ 대학은 사업과 무관한 학교 부속기관 바닥 개선을 위한 시공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·관리 매뉴얼>

[주요 집행 제한 항목]

- 토지의 매입, 건물의 신축 불가
- 학생 교육 및 연구활동과 무관한 환경개선 비용 집행 불가

- △△△ 대학은 사업목적과 무관한 옥외 간판교체 비용, 학교 회의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

<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>

[부적정 집행사례]

- 사업과 무관한 환경개선 비용 집행
 - 사업의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, 보도블록 교체, 조명, 광장조성 등의 사업비 집행
 - 대학의 통상적인 업무를 위해 구비해야하는 소프트웨어(한글, MS오피스 등)에 대한 집행
- 자산성 환경 개선 비용 집행
 - 토지의 매입 및 건물의 신축

③ 사업과 무관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집행

- ♣♣♣ 대학은 사업과 무관한 단체복, 모자 등을 사업비로 집행

<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>

[부적정 집행사례]

-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비
- 사업의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비 집행

2. 대학 자체 지급기준 미준수

□ 지적내용

① 전문가활용비(강사료) 지급기준 미준수

- ◆◆◆ 대학은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학 자체 강사료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비 집행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·관리 매뉴얼>

[부적정 집행사례]

- 전문가 활용비(강사료 등) 초과 집행

② 회의비 지급기준 초과 집행

- ■■■ 대학은 성과공유회를 운영하면서 대학에서 정한 1인당 회의비 (식비, 다과비, 숙박비 등)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

<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>

[부적정 집행사례]

- 사업관리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등 구입 비용
- 기준 단가를 준수하지 않은 여비의 초과집행

3.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① 대학 축제 및 행사 개최에 따른 섭외비용 지출

- ■■■ 대학은 학교 축제 및 행사 개최 등에 따른 출연진(연예인) 섭외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

<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·운영 기준>

- 사업과 무관한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,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성(보상) 지출, 외유성 국내외출장비, 동문회, 교직원 동호회 행사 등 집행 불가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·관리 매뉴얼>

[주요 집행 제한 항목]

-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
- 동문회 행사 비용, 교직원 동호회 행사 비용 등(행사비는 주요 참석대상이 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)

② 기타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

- ■■■ 대학은 대학 본부가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·취임식 관련 경비를 사업비로 집행

<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>

- ※ 홍보비 및 행사비의 경우, 학생 유치 목적의 대학 홍보나, 입학식·졸업식 등의 학생 대상의 행사에 한하여 집행 가능

4. 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

□ 지적내용

① 사업기간 외 사업비 집행

- ◆◆◆ 대학은 사업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컨텐츠 구독료를 집행

<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·운영 기준>

- [사업비 관리]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
- [회계연도]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함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·관리 매뉴얼>

-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지원
- [부적정 집행사례] 사업기간 외 사업비 집행

<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>

- [부적정 집행사례] 사업 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집행

<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>

-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함
- 연도별 사업비는 당해연도 지출을 원칙으로 함
- 기자재 구매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,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
- ※ 사업기간 최종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·납품·설치가 완료(검수완료) 되어야 함

② 비목별 집행한도 초과

- ●●● 대학은 당해연도 인건비 집행한도를 초과하여 집행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·관리 매뉴얼>

- 인건비는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25% 이내 집행 가능 (※ 2024년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)

- ★★★ 대학은 사업 규정에서 정한 예산 편성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

<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(SCOUT)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>

- SCOUT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교원 성과급 및 사업단 구성원 인센티브 지급 가능
- 보직수당, 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총 합산액은 국고지원금 총액의 5% 범위 내에서 계상·집행 가능하며,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(합산 기준)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- ※ 사업 참여교원에 대한 보직수당, 성과급, 인센티브 등 지급 시 상위 법령 및 규정, 대학 지침 등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③ 기타 부적정 사업비 집행

- ♣♣♣ 대학은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념품을 구입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참여 대가성 기념품 제공

<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·관리 매뉴얼>

[주요 집행 제한 항목]

- 사업과 무관한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
-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
 - *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,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일회성(단발성) 특강·실습·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전원에게 장학금·상금·참석수당(현금)·보상 등을 지급하는 경우 등
- 동문회 행사 비용, 교직원 동호회 행사 비용 등
- 외유성 출장비

<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 라인>

[부적정 집행사례]

- 프로그램 참여 및 독려 등을 위한 현금(쿠폰, 기프티콘 포함), 물품 등

- ㉮㉮㉮ 대학은 회의 및 행사 개최 목적과 증빙이 불명확한 다과비를 사업비로 집행

<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>

[주요 집행 제한 항목]

- 사업 목적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(각종 광고, 입시설명회, 대학 브로셔(리플릿), 사업 선정 현수막,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) 및 행사비,선물구입비
-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
- 주류 구입 비용
-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

- 대학재정지원사업비는 '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'과 각 사업별, 연도별 지침 및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.